

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만 18세 미만 장애등급 1~3급 장애아 돌봄사업		
사업비 (당해년도)	3,295,948천원	(국비)988,785천원	(사비)2,307,163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장애인자립지원과	안찬율 2133-7470	경자인 2133-7472	김기수 2133-7439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605,159) 2,157,300	(x988,785) 3,295,948	(x383,626) 1,138,648	(x63) 52
사회복지사업보조	(x605,159) 2,157,300	(x988,785) 3,295,948	(x383,626) 1,138,648	(x63) 52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3,295,948,000원	= 3,295,948천원

3 사 업 설 명

사업목적

-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양육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돌봄, 가족휴식 지원
-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과중한 돌봄 부담 경감

사업근거
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(가족지원) 제1항 및 동법 제24조(돌봄 및 휴식지원)

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1~3급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 가정
- 규 모 : 481가정/년 528시간(월 88시간) 이내 지원
(단 선정 후 1개월간 미사용 시 서비스제한)
- 사업기간 : 2019. 1~12월
- 사업내용 : 장애아가족 양육지원(국가사업)

추진경위

- 장애아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
- 장애아 양육자의 '돌봄'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 필요

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,295,948	
기본계획 수립	2019.01		
사업비 신청 및 집행	2019.01~2019.12	3,295,948	월별 신청 및 교부
사업비 집행 정산	2019.12~2019.12		

4 사 업 효 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장애아돌보미 파견 : 398가정, 39,077건 139,639시간 서비스 제공
2017년도	○ 장애아돌보미 파견 : 434가정, 37,713건, 139,337시간 서비스 제공
2018년도	○ 장애아돌보미 파견 : 479가정, 28,535건, 101,636시간 서비스 제공(2018년 9월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부담 경감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426,542) 1,421,809	(x-) 0	(x-) 0	(x426,542) 1,421,809	(x426,542) 1,421,809	(x-) 0	(x-) 0
2016	(x489,934) 1,633,109	(x-) 0	(x-) 0	(x489,934) 1,633,109	(x399,902) 1,454,187	(x-) 0	(x90,032) 178,922
2017	(x601,701) 2,005,670	(x-) 0	(x-) -303,699	(x601,701) 1,701,971	(x471,547) 1,571,817	(x-) 0	(x130,154) 130,154